

2023년도 제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(졸업연기) 신청 사전 안내

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23년 8월 졸업)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한 후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기간(예정) : 2023. 7. 17.(월) ~ 7. 20.(목) **※ 예정일자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.**
2. 신청방법: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[학적·졸업 - 졸업관리 - 졸업연기신청]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저장 및 발송 → 신청서 출력(본인 날인) → 학과장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(또는 학과 사무실) 제출 **※ 발송버튼을 꼭 누르셔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.**
3. 사유별 학사학위취득 유예(졸업연기) 신청대상
 - 가.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
 - 나.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
 - 다.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
 - 라.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
 - 마. 졸업예정자 중 초과 학기를 희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는 자
4.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: 1년 이내(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)
5. 유의 사항
 - 가. 학사학위취득 유예(기간변경 포함) 승인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.**
 - 나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(단,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가능)
 - 다.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
 - 라.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희망자는 2023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.
 - 마.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, 자동으로 학기 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.
 - 바.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(시험, 작품 등) 및 한국어능력시험(외국인)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가 되어,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,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함**
 - 사.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(의무수강신청제도 폐지)**
 - 아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. 다만, 재수강은 불가능함.
 - 자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, 졸업예정일 표기방법
 - 가) 6개월 신청자 → 2024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
 - 나) 1년 신청자
 - (1) 2023. 8월 졸업일 ~ 2024.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→ 2024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
 - (2) 2024. 2월 졸업일 ~ 2024.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→ 2024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
 - 차. 학사학위취득 유예(졸업연기)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